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0
----------	-----

제출년월일 : 2015.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소홀 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파 시 현재 수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계량기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나. 표준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업종 및 누진 단계를 조정하고, 상수도 요금현실화를 위해 사용요금을 인상하여 먹는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가. 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삭제 (제11조 제2항 삭제)
- 나. 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종 중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하고, 업종별 누진단계를 가정용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업무용은 5단계에서 4단계로 각각 조정
사용요금은 업종별 누진단계 요금조정 후 전 업종 평균 15.88% 인상하고 15.88%인상 시 2014년도 결산기준 평균요금은 1,215원에서 1,400원으로 185원 상승하게 됨 (안 제23조 제1항 별표1)
- 다. 업종 구분표의 구분내용 중 가정용의 “구멍가게 등”에서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사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업무용과 영업용은 업종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변경하고 일반용 구분내용을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 전,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로 변경 (안 제24조 제1항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2]

1)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 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평창군공고 제2015-1021 (2015.10.06. ~ 2015.10.27.)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행정규제 저촉사항 없음(기획감사실-11043, 2015.10.08)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기획감사실-11685, 2015.10.26)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주민생활지원과-61934, 2015.10.26)

5) 비용(순감소)추계서 : [별첨 1]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23조 수도사용료 요율표

업종 \ 요율	사용량(톤)	사용요금(원)	비고
가정용	0~20	610	
	21~30	1,100	
	31이상	1,670	
일반용	0~50	1,300	
	51~100	2,070	
	101~300	2,610	
	301이상	3,020	
욕탕용	0~200	1,880	
	201~300	2,460	
	301~500	2,910	
	501이상	3,930	
산업용		1,490	

[별표 3] 제24조 업종 구분표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 연탄, 양곡, 지물포, 철물, 문방구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업,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 미만의 소규모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보육원, 영아원, 경로당, 장애인, 노인 등)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욕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 받는 목욕장업 ○ 법령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03㎡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을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 시설소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내 입주업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u></p> <p>③ ~ ⑥ (생략)</p>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별첨 1]

비용(순감소) 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 및 교체비
수도사업자가 부담
- 나. 상수도사용요금을 누진단계 조정 후 업종별로 15.88%인상
- 다. 관련조문 : 평창 수도급수 조례 제11조2항, 제23조제1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계량기 대금 및 교체비 : 연간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 대수
20개, 계량기 1개당 단가 55,000원 교체비 35,000원으로 추계
- 상수도사용료 급수수익 : 누진단계 조정 후 전 업종 15.88%인상
하는 것으로 약6억원의 급수수익은 증가되나 비용 발생은 없음

나. 추계 결과

(단위: 개, 원)

업체	개정 전			개정 후		
	동파대수	단가	비용	동파대수	단가	비용
계량기 대금 및 교체비	20	-	-	20	90,000	1,8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별도의 재원조달 요구되지 않음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연락처	(033) 330 - 2363

연도별 비용(순감소)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1,800	1,800	1,800	1,800	1,800	9,000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취

【 수도법 】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지방자치법 】

제136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지방공기업법 】

제22조 (요금)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8.4>